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03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주철현·송옥주·조계원

박균택 · 임호선 · 김문수

양문석 • 문금주 • 황 희

윤준병 • 문대림 • 이병진

임미애 · 서삼석 · 이원택

의원(15인)

제안이유

급격한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이와 관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199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였고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원에서 2023년 6,247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음.

이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자재와 전기·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 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수산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수산자재 및 에너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가소득의 증대와 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 및 어업에너지비용 지원 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에게 필수수산자재 등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수산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수산자재 등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제9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

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 금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 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및 수산자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가 소득의 증대와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2. "필수수산자재"란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 및 수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나. 미끼, 동물의약품, 종자, 사료, 냉보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자재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수산 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 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수산자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수산자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필수수산자재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필수수산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 3. 필수수산자재의 품목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필수수산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필수수산자재의 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 6. 필수수산자재의 지원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7. 필수수산자재등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필수수산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년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에게 필수수산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수 산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 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 ② 그 밖에 지원 품목과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필수수산자재 지원금의 사용) 제6조에 따라 필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필수수산자재 가격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수산자 재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수산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수산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필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하 는 행위
 - 2. 제8조를 위반하여 필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② 해양수산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원금이 나 목적 외 용도 사용금액의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
 - 2. 제8조를 위반하여 필수수산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